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50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161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완료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0-1191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6
- 정선군 공고 제2020-1192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8
- 정선군 공고 제2020-119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71

○ 정선군 공고 제2020-119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정선군 공고 제2020-119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5
○ 정선군 공고 제2020-120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공람 · 공고.....	90
○ 정선군 공고 제2020-120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9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50호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정 선 군 수

1. 고 시 명 :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지정내역 : 7개소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82 외 6개소)

3. 고 시 일 : 2020. 10. 23.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161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완료 공고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
 - 나.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체육시설)
3. 사업의 면적 (금회시행)
 - 가. 면 적 : A=36.1㎡(체육시설_라커룸)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신동읍)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20. 12. 31.

정선군 공고 제2020-1191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비대면 소비증가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거 촉진하고자 하며,
- 관련 지침 개정으로 분리수거 체계 세분화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을 신설하고,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며,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집·운반·처리 원가가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급안 마련
 -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안 마련(안 제6조의2)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방법 세분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분리수거 방법을 세분화하여 분류(안 제8조)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3)
-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안 제16조)
-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기준 확대
 - 복지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마련(안 제19조)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8조의2, 안 제9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0. 26. ~ 2020. 11. 02.

※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축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0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9),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방치하는”을 각각 “내버려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를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필요없”을 “필요 없”으로, “일자”를 “날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일자”를 “날짜”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5톤미만”을 “5톤 미만”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급 및 판매, 보관등 관리능력”을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으로, “공급 및 판매, 보관등 관리”를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급 및 판매,”를 “공급, 판매 및”으로, “일정율”을 “일정 비율”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을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유없이 30일이상”을 “사유 없이 3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허가없”을 “허가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11,670원씩”을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7에 따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공원 또는”을 “따른 공원 또는”으로, “의한 공원을”을 “따른 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공급하여”를 “공급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상호”를 “서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의 표 하단의 연락처란 중 “환경산림과”를 “환경과”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제2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	<u>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u>각 호</u>-----. 1.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 ----- ----- ----- -----. 2. ----- ----- <u>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 제2조에 따른 -----

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6. (생 략)

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 ---- 영 제2조에 따른 --

-----.

3.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별표 1-----
-----.

4. -----

----- 않고 -----

----- 별표 2-----
-----.

5.·6. (현행과 같음)

7.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이 조례는 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
물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
군 일 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
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
지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
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
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14조에 따른 --

-.

③-----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④제2항에 따른 -----

-----.

제3조의2(청결명령 등) ①-----

-----.

1. -----
----- 않는 -----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행위

3. 무단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
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
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
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
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
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2. -----
---- 내버려두는 --

3. -----
-- 내버려두는 -----

4. 그 밖에 -----

②제1항에 따른 -----

-----.

③-----
----- 제1항에 따른
----- 않
을 -----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 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 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3.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른 -----

-----.

③제2항에 따른 -----
----- 없으면 -----
-----.
----- 그 밖에 -----
----- 필요한 비용

-----.

④제1항에 따른 -----

-----.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5. (생략)

<신설>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와 같이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1.·2. (생략)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략)

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일자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생략)

②군수는 제1항에 의거 검사한 결과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②----- 필요 없-----
----- 날짜-----
--.

③----- 별표 2-----

-- 날짜----- . 다만,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 2의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5톤
미만-----

----- 따
른 -----
---. -----
----- 법 제25조
에 따른 -----
-----.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칙으로 정한다.</u>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과태료 부과</u>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호에 <u>해 당하는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과 구분하여 부 과할 수 있다.</u>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② (생 략)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u>명</u>	<u>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u>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분명하게 적고</u>-----
---	---

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② (생략)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자체에서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제11조의2(유통중인 봉투의 품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넒
는 -----

--.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

④ -----

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및 판매, 보관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 는 민간·기관에 공급 및 판매, 보관등 관리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보관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 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생략)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읍·면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

-----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

⑤-----
----- 공급, 판매 및 -----

----- 일정 비율-----
-----.

제13조(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해당 -----

----- 않을 -----.

③----- 제17조에 따라 -----

-----.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판매자는 읍·면장 이외의 자
로 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 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기간이 종
료된 판매자는 판매소의 지정서
를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읍·면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
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
장 소재지를 읍·면장의 허가
없이 변 경할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

②----- 자로
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 ----

-----.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

-----.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
----- 각 호 -----
--- 제13조제1항에 따른 -----
-----.

1. ----- 사유 없이 30일 이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

----- 허가
없-----
3. 제14조에 따른 -----
----- 사유
없-----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
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
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
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생략)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
표6에 의한다.

③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는 쓰레기처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11,67
0원씩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읍·면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
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
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관광지
용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
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
별적으로 관광지용 쓰레기봉투
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
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

-----.

1. -----
----- 않는다.

2. ----- 별표
1-----.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
표 6에 따른다.

③-----

-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
은 별표 7에 따라 -----
-----.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한다) 단,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름 피서철에만 운영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

1. -----

----- 따른 -----

--- 다만,-----

-----.

2. -----

----- 따른 공원

또는 ----- 따른

공원을 -----

3. 그 밖에 -----

②----- 각 호-----

해당 -----

-----.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

----- 따라 -----

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
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
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생 략)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 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교환한 때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와 상호 정산하여야
한 다.

----- 대해서-----
----- 그
밖에 -----.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공
급해-----.

제19조의2(쓰레기봉투의 교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로 -----.

제21조 삭제 제21(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조문 이동 2019.12.27. 제21조의2에서 이동) ①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에서 이동)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항자가 시설 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이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 이동 2019.12.27. 제25조에서 이동)

제21조 삭제 제21(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지급)<조문 이동 2019.12.27. 제21조의2에서 이동)

②제1항에 따른 -----

---.

제22조(준용규정) -----
----- 않은

--.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에서 이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
-.-

[별표 1]

대형폐기물의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8조 및 제16조관련)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전 제품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500ℓ 이상	10,000
		300ℓ 이상	7,000
		300ℓ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29인치이상	7,000
		25인치이상	6,000
		12인치이상	5,000
		12인치미만	3,000
	세탁기	모든규격	5,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에어컨	264㎡형이상	10,000
		66㎡형이상	7,000
		66㎡형미만	5,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4,000
	가스렌지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4,000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3,000
	가습기	모든규격	3,000
	팩스기(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전축	높이1m이상	7,000
		높이1m미만	5,000
	컴퓨터	본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	3,000
		키보드	1,000
	스피커	모든규격	2,000
	난로	석유난로	4,000
		전기스토브	2,000
	전기밥솥(통)	모든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5,000
		가정용(일반형)	3,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구	장롱, 장롱	120cm장1쪽	20,000
		90cm장1쪽	15,000
	소파	대형6인용	8,000
		소형4인용	6,000
		소형3인용	5,000
		2인용	4,000
		1인용(1인용당)	3,000
	책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5,000
	식탁	6인용이상	7,000
		6인용미만	5,000
	침대(매트리스포함)	2인용이상	10,000
		1인용	6,000
	싱크대	높이90cm이상	7,000
		높이90cm미만	5,000
	매트리스	대형	10,000
		2인용	8,000
		1인용	5,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의자	2인용이상	4,000
		1인용	2,000
	장식장(책장)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5,000
	화장대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문갑	1쪽	4,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5단미만	4,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캐비닛	4단이상	8,000
		4단미만	5,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생활 용품	페타이어	대형(size20이상)	7,000
		중형(size16~19)	5,000
		소형(size15까지)	3,000
	보일러(통)	대형	10,000
		중형	7,000
		소형	4,000
	변기	모든규격	6,000
	욕조	모든규격	7,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피아노	그랜드	30,000
		어프라이트	20,000
	쌀통	80kg이상	5,000
		80kg미만	4,000
	오르간	모든규격	10,000
	장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4,500
		아동용(두발)	4,000
		아동용(세발)	3,500
	수족관	길이1m이상	5,000
		길이1m미만	3,000
	카펫	모든규격	4,000
	유모차	모든규격	3,000
	보행기	모든규격	3,000
	자판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7,000
	벽시계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대자리	모든규격	2,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상, 밥상	6인이상	3,000
		6인미만	2,000
	간판	60cm×180cm이상	10,000
		60cm×180cm미만	6,000
	게임기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6,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기타	기타가전제품 및사무용품	대형	7,000
		중형	5,000
		소형	3,000
	기타봉투에 넣기 어려운것	쌀마대(80kg)1개	4,000
		쌀마대(60kg)1개	3,000
		쌀마대(40kg)1개	2,000
	폐소화기류	10kg초과	7,000
		10kg이하	5,000
		3.3kg이하	3,000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8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 무색 투명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 등 「쓰레기 수수료 중량세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기 전하터 오디오, 전 기밥솥, 연수기, 가습 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 기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 품	·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 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 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 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6조 관련)

최종판매가격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효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효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효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 판매수수료: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 \times \text{판매수수료 효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 효율})\}$ 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 쓰레기봉투 가격 》

(단위 : 원/매)

용량별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	비 고
2ℓ	64	6	70	
3ℓ	73	7	80	
5ℓ	101	9	110	
10ℓ	202	18	220	
20ℓ	385	35	420	
30ℓ	587	53	640	
50ℓ	963	87	1,050	
75ℓ	1,431	129	1,560	
100ℓ	1,899	171	2,070	

[별표 7]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원)

적용대상 폐기물	단위	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	47,250원

[별표 8]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illegible]

〈작성요령〉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illegible]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 제5항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6.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25조 제9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 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1의3.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 제2항, 제25조 제11항, 제29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 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12의2.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2의3.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4.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별표 1 제1호의 품목에 따라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기에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환경과장 전 광 덕

정선군 공고 제2020-1192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부단체장 통솔범위 축소를 통한 부담감 해소 ⇒ 국 설치
- 나. 타 부서 대비, 업무량 및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서에 대한 분과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다.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개정
 - 제2조 제1항 개정 : 국·담당관 설치
- 나. 제2장 본청 개정
 - 제3조 ~ 제15조 전부개정 : 국·담당관 설치, 과 분과, 과 직제조정
- 다. 기타 각 조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jung7708@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시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산하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
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아동·보육·청소년·노인·여성가족·의료구호·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15.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회계·세무·민원·여성청소년·복지·경제·지역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 ① 시설국에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9.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4.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5.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7.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8.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22.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문화관광·환경·산림·안전·건설·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과와,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 및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 농지관리
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5.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6.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7. 양곡관리
8.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9.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0.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14.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15.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16.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17.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
18.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
19.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
20.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
21.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22.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23.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2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25.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26.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27.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
2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는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소장은 군수의,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지소는 제1항의 관장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제13조(설치) ① 군에 법 제114조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관장사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에 둔다.

제14조(소장)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
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
5. 수질검사 및 관리
6. 지하수 관리
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읍장·면장)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관장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직무) 읍장·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2. 민원서류 발급
3. 리·반 조직운영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6장 읍·면 출장소

제19조(설치) ① 읍·면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사무를 관장하는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 업무
2.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1항 중 부서의 명칭과 직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① 행정국장과 시설국장을 신설하고, “기획실장”은 “기획관”으로,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며, “경제과장”은 “경제과장”과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 ② 행정국에는 7개 과를 두고, 직제는 회계과(주무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한다.
- ③ 시설국에는 6개 과를 두고, 직제는 문화관광과(주무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한다.
- ④ 보건소에는 2개 과를 두고, 직제는 보건정책과(주무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정선군보건소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 일원
고한사복지소	고한읍 물한리길 10	고한읍, 사북읍 일원
신동읍지소	신동읍 의림로 313	신동읍 일원
화암면지소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화암면 일원
남면지소	남면 별어곡1길 59	남면 일원
여량면지소	여량면 서동로 2885	여량면 일원
북평면지소	북평면 북평6길 34	북평면 일원
임계면지소	임계면 송계8길 9	임계면 일원
용탄보건진료소	정선읍 가리왕산로 290	정선읍 용탄1~3리, 회동1~2리
광하보건진료소	정선읍 망하길 87	정선읍 광하1~2리, 굴암리, 가수리
조동보건진료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1~9리, 방제1~2리
고성보건진료소	신동읍 창말길 26	신동읍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3리
호촌보건진료소	화암면 풍촌1길 12-6	화암면 몰운1~2리, 호촌리, 건천리
증산보건진료소	남면 도원2길 27	남면 무릉1~5리
광락보건진료소	남면 광락로 46	남면 낙동1~3리, 광덕1~2리
구절보건진료소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여량면 유천1.3리, 구절1~3리
도전보건진료소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반천보건진료소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임계면 반천1~2리, 고양리, 여량면 봉정리
문래보건진료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	임계면 문래1~3리, 덕암리, 용산2리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2항 관련)

출 장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신동읍 함백출장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리, 방제리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시·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시·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정선군 공고 제2020-119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부단체장 통솔범위 축소를 통한 부담감 해소 ⇒ 국 설치
- 나. 타 부서 대비, 업무량 및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서에 대한 분과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다.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2. 주요내용

- 가. 국 및 담당관 설치, 경제과 및 보건소 분과에 따른 시행규칙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jung7708@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국장,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부군수를, 각 과장은 국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산하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시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5조(직급)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및 기술연구과를 둔다.

② 센터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농업축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2. 기술지원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농촌지도관
3. 기술연구과장 : 지방농촌지도관

제7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절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8조(직급)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제10조(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읍 · 면

제12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 · 면에 두는 읍장 · 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

명한다.

1. 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화암면장·임계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3. 정선읍장·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제13조(분장사무) 읍장·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6장 읍·면 출장소

제14조(직급)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제1항 중 부서의 명칭과 직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① 행정국장과 시설국장을 신설하고, “기획실장”은 “기획관”으로,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며, “경제과장”은 “경제과장”과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 ② 행정국에는 7개 과를 두고, 직제는 회계과(주무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한다.
- ③ 시설국에는 6개 과를 두고, 직제는 문화관광과(주무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한다.
- ④ 보건소에는 2개 과를 두고, 직제는 보건정책과(주무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시·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시·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정선군 공고 제2020-119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국 신설, 상대적 조직 규모가 큰 부서(경제과, 보건소) 분과, 재난안전 전담인력 확충, 감염병 및 자살예방 대응인력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인력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및 특이민원 대응인력 확충, 통합민원실 운영인력 확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34명 → 654명 (증 20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23명 → 643명 (증 2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 : 본청(3), 직속기관(1) (증 3명)
- 4급·5급 : 삭제 (감 3명)
- 5급 : 본청(15), 의회(2), 직속기관(4), 사업소(1), 읍면(9) (증 4명)
- 6급이하 : (577) ⇒ (593) (증 16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jung7708@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634명”을 “654명”으로 하고 제1호중 “623명”을 “643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4	654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9	629				
4급	4	3		1		
4급·5급	0	0		0		
5급	31	15	2	4	1	9
6급 이하 계	593	593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 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634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3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54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43명</u>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9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국 신설, 상대적 조직 규모가 큰 부서(경제과, 보건소) 분과, 재난안전 전담인력 확충, 감염병 및 자살예방 대응인력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인력 확충, 주민참여예산제 및 특이민원 대응인력 확충, 통합민원실 운영인력 확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34명 ⇒ 총 654명 (증 20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증원 : 20명

(단위 명)

조직개편 (국 설치)	재난안전 전담	감염병 대응 및 자살예방	치매안심센터 운영
5명 지방서기관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세무주사 1	1명 지방행정·시설서기 1	2명 지방간호서기 1 지방보건서기보 1	3명 지방사회복지서기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지방간호서기 1

다함께 돌봄	주민참여예산제	특이민원대응 및 통합민원실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명 지방행정서기 1	2명 지방행정서기 1 지방세무서기 1	5명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 부서별 증원 : 36명

(단위 명)

회 계 과 (조직개편)	세 무 과 (조직개편, 통합민원실 운영)	문화관광과 (조직개편)	전략산업과 (조직개편_신설)	보 건 소 (조직개편)
1명 지방서기관 1	2명 지방행정·세무주사 1 세무서기 1	1명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1	13명 지방행정사무관 1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행정·공업주사 2 지방공업주사보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1 지방공업서기 1 지방행정·공업서기 1 지방행정·시설서기 1 지방공업서기보 1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	1명 지방보건·간호· 의료기술사무관 1

건 설 과 (재난안전 전담)	보 건 소 (감염병·자살예방,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기 획 실 (주민참여예산제)	민 원 과 (특이민원 대응)
1명 지방행정·시설서기 1	5명 지방간호서기 2 지방보건서기보 1 지방사회복지서기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명 지방행정서기 1	1명 지방행정서기 1

안 전 과 (공영버스)	복 지 과 (주공사업)	신 동 읍 (주공사업)	화 암 면 (주공사업)	여 량 면 (주공사업)	북 평 면 (주공사업)
4명 지방행정주사 1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지방행정서기 1 지방행정서기보 1	1명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1	1명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1	1명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1	1명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1	1명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1

○ 부서별 감원 : 16명

(단위 명)

경 제 과 (조직개편)	신 동 읍 (일반행정)	화 암 면 (일반행정)	여 량 면 (일반행정)	북 평 면 (일반행정)
9명 지방행정·공업주사 2 지방공업주사보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1 지방공업서기 1 지방행정·공업서기 1 지방행정·시설서기 1 지방공업서기보 1 지방토목운영서기보 1	1명 지방기계운영주사보 1 (안전과)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안전과)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안전과 / 지방행정주사 조정)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전략산업과 / 지방행정주사 조정)
세 무 과 (조직개편)	민 원 과 (일반행정)	기 획 실 (일반행정)		
1명 지방행정·세무서기 1 (안전과 / 지방행정서기 조정)	1명 지방행정서기 1 (전략산업과 / 지방행정주사 조정)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전략산업과 / 지방행정주사보 조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jung7708@korea.kr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1200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19-251호(2019. 12. 06)로 최초 결정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2)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야구장)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 시행	
체육시설	야구장	25,387㎡	▪ 야구장 조성 A=13,458㎡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문화관광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3.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10. 30 ~ 2020. 11. 13.)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및 문화관광과(☎033-560-2132, 2547)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신동읍 조동리	260-5	학	4,046	3,939		정선군	-	-	-
2	신동읍 조동리	260	전	542	59		정선군	-	-	-
3	신동읍 조동리	산97-5	천	20,422	146		국 (건설부)	-	-	-
4	신동읍 조동리	산97-2	철	4,364	113		국 (국토교통부)	-	-	-
5	신동읍 조동리	263-8	철	56	47		국 (국토교통부)	-	-	-
6	신동읍 조동리	산95-1	철	198	112		국 (국토교통부)	-	-	-
7	신동읍 조동리	263-9	철	92	47		국 (국토교통부)	-	-	-
8	신동읍 조동리	263-11	학	16,397	8,659		정선군	-	-	-
9	신동읍 조동리	263-77	철	382	256		정선군	-	-	-
10	신동읍 조동리	263-7	철	1,066	80		국 (국토교통부)	-	-	-
계		10필지		47,565.0	13,458.0					

정선군 공고 제2020-1208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0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5-8번지 일원
3. 규 모 : 주차장 신설 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11. 02. ~ 2020. 11. 17.)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정선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제출인 (인)

정선군수 귀하